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특정인을 채용할 목적으로 규정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부당한 수의계약, 단일사업 조개기(분할 발주), 입찰·계약 방식을 불공정하게 적용하는 행위

사적 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강요·유도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공무원A가 술을 먹으면서 자신이 술값을 계산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계좌로 술값 전부를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업무회의를 요청하면서 법인카드로 좋은 음식을 먹자고 하는 행위

부당한 인사 유형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유형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의해 편파적인 근무평정을 하거나 특정 부서로 이동시키는 행위
인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이 인사업무에 관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행위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는 유형

- 면접에서 심사와 관련 없는 신상을 물거나 고압적인 태도, 외모 비하 등을 일삼는 행위
- 공식석상에서 부하직원을 “야”. “너” 등의 반말로 부르는 행위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간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과도한 실적·업종·지역 제한, 특정업체 사용 요구 등 입찰조건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계약 시에 과도한 특약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대금지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업무 불이익 유형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는 유형

- 상급자가 휴가기간에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업무지시를 하여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 상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근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며 익일 아침에 보고하도록 강요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는 유형

- 특정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 요청을 취하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돌리는 행위
- 처리하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에게 떠넘기는 행위

기타 유형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차별행위 등을 하는 유형

- 이유 없이 인사를 하여도 무시하고 말을 걸어도 응답 없는 행위
- 부당 행위에 대해 직원들이 눈치 보며 이의제기를 못하는 사례
- 보고한 업무에 답이 없고, 업무 분장 시 직원의 의견 없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행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KIHS
갑질 예방 및 신고
방법 안내

<상담문의>

행동강령책임관/갑질근절담당관

- 직통 031) 9956-119 / kihs119@kihs.re.kr
- 내선 번호 (806) / jchan@kihs.re.kr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담당자

- 내선 번호 (969) / leesy@kihs.re.kr

갑질 개념 정의

1 갑질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2 가해자

갑질을 행하는 사람

3 피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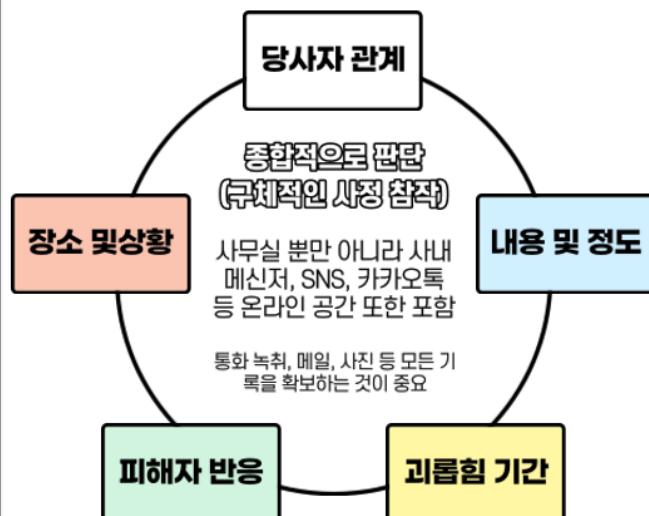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

4 사건관계인

갑질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

갑질 판단 기준

갑질 여부는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 내용, 그 당시 사자와의 관계 등과 같이 당시 상황과 공사(公私)의 구분, 관련 법규,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갑질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 1 성과 창출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적정범위 내 업무 지시
- 2 갑작스런 상황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한 소관업무 외의 지시
- 3 근무성적 평가에서 정당한 업무 범위(권한) 내 하위 등급 부여
- 4 통상적 범위에서의 사생활 관련 질문
- 5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과도한 신체접촉이나 욕설, 폭언, 외모 및 인격비하 발언이 동반된다면 **갑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처 요령

- 1 행위중지 요구
갑질행위를 당하였을 때 가해자에게 즉시 요구
- 2 신고(상담) 요청
증거요구와 상관 없이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가능
- 3 피해구제 요청
심리치료, 가해자와 격리, 법률전문가나 조력인 지정 등 요청 가능
- 4 정보공개 청구
신고 및 상담 결과에 대한 조사관련 정보 공개 청구 가능

피해자(피해구제 요청)

심리치료 요청/가해자와 격리 요청/ 원활한 조사 등을 위해 전문가 등 지정 요청/ 조사관련 정보공개 청구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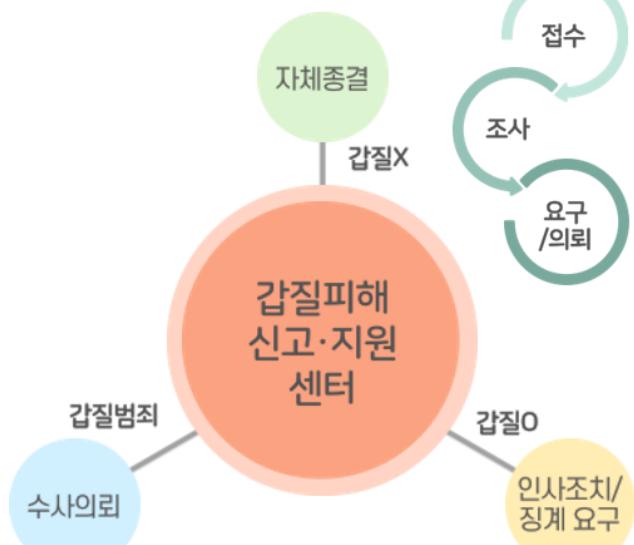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및 조사/갑질행위 입증자료 요구/ 갑질 은폐 등이 있는 경우 징계 요구/ 피해자 보호 및 행정지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갑질 발생시) 2차피해 방지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
(피해자 요청시) 심리치료 등 조치/ 가해자와 격리/전문가 등 지원/ 증빙자료 제공

갑질신고 업무 흐름도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갑질 더는 참지 마세요

갑질 신고(상담) 어디서 할까?

공공부문

국민신문고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www.epeople.go.kr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예정)

031)9956-1119

kihs119@kihs.re.kr

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

www.110.go.kr

카카오톡(채널: 국민콜 110)

행동강령책임관

감사실장 031)9290-806

jchan@kihs.re.kr